

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

(옥재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785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옥재은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문성호, 박상혁, 박 석, 박춘선, 박철성, 서상열, 송경택, 신복자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이경숙, 이병운, 이상욱, 이새날, 이종배, 이종태, 임춘대, 최민규, 최유희, 최진혁, 최호정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45명)

1. 제안이유

- 노후된 학교의 리모델링, 증 개축 공사 수행 및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모듈러 교실 설치가 필요한 학교에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유동적 발전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다.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).

라. 모듈러교실을 설치함에 있어 관련 기관,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(안 제6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

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듈러교실 설치가 필요한 학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모듈러교실”이란 학교시설인 임시교사로서 골조, 마감재,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 운송 및 단순 조립을 통해 축조한 형태의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

2.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3.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
4. 소방·안전·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교육감이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재정 지원)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재정 지원의 시기,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유관기관,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